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국 민 체 육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금년도 연수과정을 미시행하게 되었음.

대통령령 제30238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 중 자격검정요건을 충족(별표3에 따라 일부 혹은 전체 면제된 요건)하였음에도 금년도 연수과정이 미 실시됨에 따라 경과조치 기한인 2020년 12월 10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경과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연수과정에 한해서 경과조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30238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한을 연수과정에 한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23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1년”을 “1년(연수과정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대통령령 제3023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3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u>1년</u>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 ----- ----- ----- ----- ----- ----- ----- ----- <u>1년(연수과정에 대해서는 2년)</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연 락 처	(044) 206 - 3130